

춘천지방법원 2022. 10. 20 선고 2021나33736 판결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2022. 10. 20 선고 2021나33736 판결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. 6. 1 선고 2019가단2178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길(소송구조)

피고, 피항소인 C

변론종결 2022. 9. 22.

판결선고 2022. 10. 20.

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. 6. 1. 선고 2019가단2178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D 전 2,810㎡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(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)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신흥호, 판사 여현주, 판사 장두봉